

건명: 스마트모듈러센터 건립사업 공사비 원가계산 용역

과업지시서

2026. 7.

한국광기술원

과업지시서

1. 과업명 : 스마트모듈러센터 건립사업 공사비 원가계산 용역

2. 과업목적

한국광기술원에서 시행중인 스마트 모듈러센터 건립사업의 공사비에 대하여 원가산정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의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.

3. 과업내용 및 대상

스마트모듈러센터 건립사업 공사비에 대한 금액산출의 적정성 검토

가. 건축공사: 178억 원(건축146억, 전기20억, 소방7억, 통신5억)

나. 건설사업관리 용역: 27억 원

* 사업비는 건설기술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

4. 과업의 범위

가. 적정 공사비 산정 확인

(1) 각 항목별 적정단가 적용여부

(2) 각 분야 공사별 기술자 및 근로자의 적정 배정기준을 통한 노무비 산정여부

(3) 재료비, 제경비의 비목별 적정분류 산정여부

(4) 산출방법별(요율적용 등)로 적정한 수준의 일반관리비, 경비, 이윤과 정확한 총괄원가 산정여부

나. 내역서 검토

(1) 설계예산서의 각 항목별 적용자료 및 기준 확인

(2) 부적정한 적용자료 및 기준에 대하여 근거제시 후, 수정자료 제출

(3) 설계예산서의 항목별 정확한 수치계산 확인

(4) 부적정한 단가 및 수량의 산출내역과 계산착오사항 등은 수정 후, 정확한 자료 제출

5. 과업수행의 일반적인 준수사항

가. 적용자료 및 기준

- (1) 본 과업에 적용하는 자료 및 기준은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다.
- (2)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.
- (3)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(외국문헌 포함).
- (4) 단가 적용은 시중노임단가(매년발행본), 가격정보, 물가자료 등을 참고하여 명기하여야 하며, 견적 처리되는 것은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.

나. 과업수행 준수사항

- (1) 본 과업은 우리 원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한다.
- (2) 과업수행중 중요한 문제가 발생시 그 내용을 우리군에 보고하고 협의 후 결정해야 하며, 기타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때에도 감독관과 협의 처리한다.
- (3) 본 건의 원가 계산시 실적 공사비에 의한 원가계산은 적용하지 않는다.

다. 보안준수사항

- (1)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이 져야 한다.
- (2) 본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·인계를 철저히 하며,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상 폐기처리 되는 문서는 완전소각처리한다.
- (3) 기타 보안관련 사항을 감독이 요구할 시 이에 따라야 한다.

라.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

- (1) 부실원가계산에 따른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.
- (2)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.

6. 과업수행기간: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.

7. 과업의 성과품 제출

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내 원가계산 및 제반자료와 기타 과업수행 성과품을 서면 및 디지털 저장수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우리 원의 보완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.

가. 원가계산 결과 및 제반자료 서면 3부

나. 디지털 저장장치(USB메모리 3개)

다. 기타 참고자료 및 발주부서 요구하는 성과품. 끝.